



## 캐나다 투자법: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및 중국해양석유유한공사(CNOOC)/넥센 인수 거래 국영기업에 의한 외국인 투자거래: 청신호와 적신호

오늘 캐나다 수상은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국영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음 또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영기업들에 의한 계속적인 오일샌드 자산의 지배권 인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캐나다에 대한 순 혜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기업에 의한 인수거래의 경우에도 합작투자나 비지배 목적의 지분참여 등은 지속적으로 환영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캐나다 수상의 입장표명 이후, 산업부장관은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승인 요청 중인 [CNOOC 의 NEXEN 인수 거래](#)와 [PETRONAS 의 Progress Energy 인수 거래](#) 모두 현행 캐나다 투자법과 기존의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캐나다에 대한 순 혜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를 모두 승인한다;
-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국영기업의 정의를 확대하여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개정된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영기업 투자자들이 투명하고 상업적인 운영을 확약하도록 하고 외국정부에 의한 영향력 수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곧 발표 예정인 캐나다 투자법상 WTO 투자자에 의한 직접적 지배권 인수 거래의 검토 기준금액 상향을 국영기업 투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2013 년 예정), WTO 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의 검토 기준금액은 캐나다 사업의 기업가치 기준 \$6 억으로 상향되며, 향후 4 년 동안 \$10 억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검토 기준금액 상향은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 기준금액인 자산 장부가 기준 \$3 억 3 천만이 계속 적용된다.

Stikeman Elliott은 CNOOC  
의 Nexen 인수 거래를 법률  
대리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 이와 같은 발표는 승인 요청 중인 \$200 억 규모(부채 인수 포함)의 CNOOC 거래와 \$60 억 규모의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PETRONAS 의 Progress Energy 인수 거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NOOC 거래와 관련하여, 산업부장관은 본 거래가 캐나다에 대한 순 혜택 기준을 충족하며, 캐나다 투자법과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장관은 NEXEN 인수 거래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CNOOC 가 캐나다 투자법상, “기업 투명성과 공시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지배구조, 캐나다의 제반 법규 및 자유시장원리의 준수를 포함한 상업적 지향, 캐나다 경제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를 위한 고용 및 자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캐나다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장관의 발표는 캐나다 내 국영기업 투자 거래의 증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공개적이고 정치적인 논의 이후 발표된 것이며,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기각된 가장 최근 거래인 BHP Billiton PLC 의 PotashCorp. 인수 거래 (\$380 억 규모) 이후,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캐나다 회사의 인수 거래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산업부장관은 당해 거래를 심사하여 캐나다에 대한 순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승인 심사시 6 가지 요소(대부분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 년 후반에 발표된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영기업에 의한 인수 거래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캐나다 내 사업이 계속적으로 상업적인 바탕에서 운영되고 충분한 투명성과 캐나다 기업지배구조 기준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래로,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상당수의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거래가 승인되었으며, 그 중에는 PetroChina 의 오일샌드 자산 인수 거래 (\$30 억 규모)와 Sinopec 의 Daylight Energy Ltd. 인수 거래 (\$40 억 규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NOOC 의 이번 승인 요청은 관련 이슈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었고, 캐나다 정부에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거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캐나다 정부는 CNOOC 와 PETRONAS 의 거래를 기존의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 승인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거래는 좀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국영기업에 의한 캐나다 오일샌드 자산의 통제권 인수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캐나다에 대한 순 혜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임.
- 산업부장관은 캐나다 경제 전반에 대한 해외 국영기업의 투자 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특별히 다음의 내용은 세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임:
  - 인수대상 캐나다 사업에 대한 국영기업의 통제 또는 영향력의 정도;
  - 인수대상 캐나다 사업이 속한 산업계에 대한 국영기업의 통제 또는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 캐나다 사업을 인수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의 정도.



- 캐나다 사업에 대한 외국 국영기업에 의한 비지배 목적 소수 지분참여 또는 합작투자는 캐나다 경제 개발을 위해 계속적으로 환영될 것임.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외국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 있거나 외국 정부의 소유인 경우, 자유 기업 원리와 산업내 효율성을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것임.
- 국가 안보 검토에 대하여는 산업부장관에게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거래에 대하여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거래를 제외한 향후 투자 거래에 대하여, 정부는 2008 년 경쟁정책검토포널의 권고를 수용하여 검토 금액 기준을 점차적으로 \$10 억까지 상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금액 산정의 기준도 자산가치 기준에서 기업가치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캐나다 경제 내에서 서비스 및 지식기반 산업의 증대되는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의 경우, 현행의 장부가 기준 \$3 억 3 천만인 검토 기준 금액을 유지하되, 매년 직전 년도의 명목 GDP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은 국영기업이 어떻게 캐나다 경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여, 국영기업의 투자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향후 오일샌드 산업에 대한 참여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특히 오일샌드 산업)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고려할 때, 개정된 국영기업 투자 가이드라인은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분 참여를 다소 위축시키고, 동 산업 내 개발 규모와 속도를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STIKEMAN ELLIOTT 은...

Stikeman Elliott 은 본 자료에 언급된 거래들과 관련하여 CNOOC, PetroChina, PotashCorp. 을 각각 법률 대리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고의 국제 실무능력을 갖춘 변호들을 보유하고, 캐나다 내 가장 규모가 큰 인바운드 투자 거래를 상당수 업무 대리한 경험과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런던, 뉴욕, 시드니는 물론 토론톤, 오타와 켈거리, 몬트리올, 밴쿠버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를 통하여 세계 각지의 고객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업무 분야인 기업금융, 인수/합병, 상법, 은행, 구조화 금융, 부동산, 세금, 파산, 경쟁/반독점, 고용, 기업송무 등에서 캐나다 최고의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캐나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귀하의 전담 변호사 또는 아래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토

윌리엄 브라이쓰웨이트  
wbraithwaite@stikeman.com  
+1 (416) 869-5654

존 시아들로  
jciardullo@stikeman.com  
+1 (416) 869-5235

### 오타와

로슨 헌터  
lhunter@stikeman.com  
+1 (613) 566-0527

수잔 허튼  
shutton@stikeman.com  
+1 (613) 566-0530

### 캘거리

크리스토퍼 닉슨  
cnixon@stikeman.com  
+1 (403) 266-9017

키스 채트윈  
kchatwin@stikeman.com  
+1 (403) 266-9088